

정 정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77호

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2015-173호(2015.06.18.)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68호(2023.06.29.)로 결정(변경)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정사유

-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68호, 2023.06.29.)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기재 오기 정정

II.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2. 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3.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정정
 나.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
 2) 용적률 적용기준 : 정정
 ②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
 ■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(정정 전)

구 분	적용기준
상업지역	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, 생활숙박시설 제외) 비율을 용적률의 20%이상으로 하고 10%이상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

※ ※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 [별표3] 적용

※ 단, 입지특성과 공공기여(기부채납 10%이상)를 감안하여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으로 적용 가능

■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(정정 후)

구 분	적용기준
상업지역	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, 생활숙박시설 제외) 비율을 연면적의 20%이상으로 하고 용적률의 10%이상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

※ ※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 [별표3] 적용

※ 단, 입지특성과 공공기여(기부채납 10%이상)를 감안하여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으로 적용 가능

4.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III. 관계도면 : 생략

I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8)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 (☎02-2627-2063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